

#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

## 1. 관련근거

-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2호('23.1.2.)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」

## 2. 주요내용

- (신설)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

항목	제목
[자동차보험 심사지침]	<p><b>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(TPI) 인정범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TPI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동일 적용</li><li>- 교통사고(수상일 기준) 6개월 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*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등 확인</li></ul>
[자동차보험 심사지침]	<p><b>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·한의과 중복진료(외래) 인정범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중복진료 범위* 및 대상** 건강보험 급여기준 동일 적용 (범위*) <u>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·한의과 외래 진료</u> (대상**) <u>의과, 치과,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</u> <u>(의과, 치과,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18호)</u></li><li>- 중복진료 제외 범위(영상촬영검사, 전문 재활치료 등) 설정 등</li></ul>

## 3. 시행일

-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